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1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을 감축하고,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우정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기획실장 밑에 정보화담당관 폐지 및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예금사업단장 밑에 금융기술기획과를 폐지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부조직인 자산개발과 폐지 및 설계과·건축과·설비과를 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로 개편하고, 경영총괄담당관 소관이던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업무를 재정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금위험관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중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776명(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영총괄담당관·재정기획담당관·정보화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을 “경영총괄담당관·재정기획담당관·기반시설기획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⑥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 우체국망 정책 총괄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결산
3. 국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4. 우정관서(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계획 수립
5. 우체국 건립 및 대수선 중장기계획 수립

6.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건립 및 대수선
7. 우정관서를 활용한 임대사업 계획 수립
8. 우정관서의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9.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관리 총괄
11. 별정우체국 및 시설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4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0. 우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의 총괄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9조제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우체국보험 홍보업무

제3장의 제목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의2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우정직 채용 및 환직시험 운영

제10조제6항제4호, 제5호 및 제11호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26.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 관리 및 운영

제12조제2항 중 “조달총괄과·계약과·물품관리과·자산개발과·설계과·건축과·설비과”를 “조달총괄과·계약과·물품관리과·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법감시담당관, 예금위험관리과장”을 “준법감시담당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

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280”을 각각 “33,212”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12”를 “611”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009”를 “3,004”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간호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36”을 “2,113”으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식품위생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661”을 “2,642”로 하고, 전산서기 “62”를 “51”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27”을 “823”으로 하고, 전산서기보 “9”를 “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165”를 각각 “33,097”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67”을 “666”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279”를 “3,274”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간호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36”을 “2,113”으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식품위생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291”을 “2,272”로 하고, 전산서기 “62”를 “51”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27”을 “823”으로 하고, 전산서기보 “9”를 “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3의 정원 776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39명, 우정주사(우정5급) 10명, 우정주사(우정6급) 110명, 우정주사보 373명]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30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행정서기·공업서기·식품위생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8명, 우정서기보 563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생 략)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u>경영총괄 담당관 · 재정기획담당관 · 정보 화담당관 · 홍보협력담당관</u>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 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경영총괄담 당관 · 재정기획담당관 · 기반시 설기획담당관 · 홍보협력담당관</u> ----- ----- -----.
③ 경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 한다.	③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u> · <u>조정 및 우정공무원교육원</u> <u>의 운영</u>	<u><삭 제></u>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u>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 가 및 상여금 지급</u>	<u><삭 제></u>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④ 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 한다.	④ -----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u>	<u><삭 제></u>

조정 및 결산

16. 국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
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신 설>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
다.

1. 우정사업 정보화 중장기 발
전전략 수립

2. 우정사업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3. 우정사업 정보화 지침·제도
및 정책의 총괄·조정

4. 우정사업 정보화예산 편성
및 집행 총괄·조정

5. 우정사업 정보보안 정책 수
립 및 보안활동 총괄

6. 우정사업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 업
무

7. 행정정보시스템 및 우정사업
기반망 등 정보자원에 관한
정책 총괄

8. 삭제

<삭 제>

17.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
가 및 상여금 지급

<삭 제>

9. 삭제

10.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우정사업 혁신업무

<신 설>

⑥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 우체국망 정책 총괄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결산

3. 국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4. 우정관서(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계획 수립

5. 우체국 건립 및 대수선 중장기계획 수립

6.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건립 및 대수선

7. 우정관서를 활용한 임대사업 계획 수립

8. 우정관서의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9.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⑥ · ⑦ (생략) <u><신설></u> <u>제5조 · 제5조의2</u> (생략)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② (생략) ③ 삭제 ④ 우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13. 우정관서(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계획 수립</u> <u>14. 우체국 투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u> <u>15. 우정관서를 활용한 임대사업 계획 수립</u>	<u>10.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관리총괄</u> <u>11. 별정우체국 및 시설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u>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u>제5조 (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제5조의2 · 제5조의3</u> (현행 제5조 및 제5조의2와 같음)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	---

16. <u>우정관서의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u>	<u><삭 제></u>
17. <u>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8. <u>우정사업조달센터의 관리 총괄</u>	<u><삭 제></u>
19. <u>별정우체국 및 시설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u>	<u><삭 제></u>
<u><신 설></u>	
20. (생 략)	20. <u>우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의 총괄</u>
⑤ 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1. ~ 10. (생 략)	⑤ ----- -----.
11. <u>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조정</u>	1. ~ 10. (현행과 같음)
12. <u>우편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정보보호를 포함한다)</u>	<u><삭 제></u>
13. <u>우편전산장비의 보급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4. <u>우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의 총괄</u>	<u><삭 제></u>
15. <u>무인우체국 설치계획 수립 및 무인화에 관한 구축·운영</u>	<u><삭 제></u>
16. <u>우편물류 분야 정보통신기</u>	<u><삭 제></u>

<u>술(ICT) 도입 · 운영</u> 17. (생략) ⑥ ~ ⑩ (생략) 제8조(예금사업단) ① ~ ③ (생략) ④ <u>금융기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우체국예금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u> 2. <u>우체국금융 전산장비 및 인프라 구축 · 운영</u> 3. <u>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 위기 관리 및 보안계획 수립</u> 4. <u>우체국예금 관련 용품의 관리계획 수립 · 조정 및 규격 관리</u> 5. <u>전자금융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u> 6. <u>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u> 7. <u>우체국금융 전자지불결제 업무</u> 8. <u>전자금융, 금융자동화기기 등 우체국금융 공동망 업무</u> ⑤ ~ ⑧ (생략) 제9조(보험사업단) ① · ② (생략)	17.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예금사업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사업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	---

략)

③ 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우체국보험 고객만족경영
및 홍보계획 추진

13. ~ 16. (생략)

17. 우체국보험 정보화·전산개
발 계획 수립 및 운영

18. ~ 20. (생략)

④ (생략)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설>

⑥ 보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 16. 삭제

<신설>

⑦·⑧ (생략)

제3장 우정공무원교육원

제10조(우정공무원교육원) ① 우
정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 16. (현행과 같음)

<삭제>

18. ~ 2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운영
에 관한 업무

⑥ -----
-----.

1. ~ 11. (현행과 같음)

17. 우체국보험 홍보업무

⑦·⑧ (현행과 같음)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① 우정
인재개발원장-----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정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
획과·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
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13. 우정공무원교육원 경영평가

14. (생략)

14의2. 우정공무원교육원 홍보

15. (생략)

16.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
을 포함한다) 관리 및 운영

17. 삭제

18. 우정직 공개경쟁채용·경력
경쟁채용 시험 운영 지원

19.·20. (생략)

④ (생략)

⑤ 삭제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

② 우정인재개발원-----

-----.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우정인재개발원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우정인재개발원 ----

15. (현행과 같음)

<삭제>

18. 우정직 채용 및 환직시험 운

영

19.·2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u>우정공무원교육원</u> 소속 공무원 임용·복무·급여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4. <u>우정인재개발원</u> ----- ----- -----
5. <u>우정공무원교육원</u> 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u>우정인재개발원</u>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 10. 삭제	
11. <u>우정공무원교육원</u> 내 직장 교육 및 학습	11. <u>우정인재개발원</u> ----- -----
12.·13. 삭제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 24. 삭제	
<신설>	25. <u>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u>
<신설>	26. <u>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 관리 및 운영</u>
25. (생략)	27. (현행 제25호와 같음)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① (생략)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u>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계약과·물품관리과·자산개발과·설계과·건축과·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를 두되,</u>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조달총괄과·계약과·물품관리과·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우정공무원교육원
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0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우
정공무원교육원장 및 강원지방
우정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준법감시담당관, 예금위험관
리과장, 보험위험관리과장, 우
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울 강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4급 우체국의 국장, 인천 남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
5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우
정인재개발원장 -----
-----.

② -----

-- 준법감시담당관-----

----- 교육운영과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
장 -----

우체국의 국장, 경기 이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부산 사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부산 연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대전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광주·전남 지역(서남권 제외)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편집중국의 국장, 대구·경북지역(서부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편집중국의 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신 · 구정원대비표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3,280</u>	<u>33,212</u>	-68
일반직 계	<u>33,280</u>	<u>33,212</u>	-68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간호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12</u>	<u>611</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식품위생 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전 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3,009</u>	<u>3,004</u>	-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식품 위생주사보 · 간호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136</u>	<u>2,113</u>	-2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식품위생 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전 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661</u>	<u>2,642</u>	-19
전산서기	<u>62</u>	<u>51</u>	-1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827</u>	<u>823</u>	-4
전산서기보	<u>9</u>	<u>4</u>	-5
.	.	.	
.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3,165</u>	<u>33,097</u>	-68
일반직 계	<u>33,165</u>	<u>33,097</u>	-68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간호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67</u>	<u>666</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식품위생 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전 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3,279</u>	<u>3,274</u>	-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식품 위생주사보 · 간호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136</u>	<u>2,113</u>	-2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식품위생 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전 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291</u>	<u>2,272</u>	-19
전산서기	<u>62</u>	<u>51</u>	-1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827</u>	<u>823</u>	-4
전산서기보	<u>9</u>	<u>4</u>	-5
.	.	.	
.	.	.	